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8.3.22(목) 16:00

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엄재창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3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민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4조)
- 나.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(안 제5조)
- 다.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교육·컨설팅 지원사업, 환경개선 사업,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 등 지원 사업 규정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'은 도내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민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.